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. 6. 29 선고 2016가단84470(본소), 2016가단84487(반소) 판결
[지료 청구 · 소유권이전등기]

재판경과

의정부지방법원 2018. 1. 19 선고 2017나207858(본소), 2017나207865(반소) 판결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. 6. 29 선고 2016가단84470 판결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 A

피고(반소원고) B

변론 종결 2017. 6. 8.

판결 선고 2017. 6. 29.

주 문

1. 피고(반소원고)는 원고(반소피고)에게 2,320,000원 및 그 중 1,025,862원에 대하여는 2016. 4. 19.부터, 1,036,138원에 대하여는 2016. 12. 3.부터, 나머지 258,000원에 대하여는 2017. 3. 16.부터 각 2017. 6. 29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원고(반소피고)의 나머지 본소청구, 피고(반소원고)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.

3. 소송비용은 본소, 반소를 합하여 피고(반소원고)가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고만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고만 한다)에게 2,320,000원 및 그 중 2,062,000원에 대하여는 2016. 3. 16.부터 2016. 4. 18.까지는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, 나머지258,000원에 대하여는 2017. 3. 1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.

[반소]

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961/4531 지분에 관하여 2008. 10.말경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① 원고가 1971. 12. 31.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961/4531 지분(이하 '이 사건각 토지'라 하고, 각 토지 지분을 별개로 호칭할 경우 지번을 붙여 실시한다)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, 피고가 1998. 2. 11.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1961/4531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, 현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원고(961/4531), 피고(1961/4531)와 소외 C(1609/4531)이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, L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전체를 점유·경작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,2, 4호증, 을 제3, 6호증의 각 기재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

같다) 및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.

2. 부당이득금 청구(본소청구)

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·사용하고 있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액은 당해 부동산 임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데, 이 법원의 감정축탁결과에 의하면, 이 사건 각 토지의 2006. 3. 16.부터 2016. 3. 15.까지의 임료 합계액은 2,062,000원이고, 2016. 3. 16.부터 2017. 3. 15.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258,000원이라는것이다.

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2,320,000원(=2,062,000원 + 258,000원) 및 그 중 이 사건 각 토지 중 1208 토지의 2016. 3. 15.까지의 부당이득금 1,025,862원[= 2,062,000원 × {1208토지 2,995㎡ / (1207토지 3,025㎡+ 1208 토지 2,995㎡), 원 미만 절사]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6. 4. 19.부터, 1207 토지의 2016. 3. 15.까지의 부당이득금1,036,138원(= 2,062,000원 - 1,025,862원)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구하는 2016. 12. 1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6. 12. 3.부터, 나머지이 사건 각 토지의 2016. 3. 16.부터 2017. 3. 15.까지의 부당이득금 258,000원에 대하여는 2017. 3. 16.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. 6. 29.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값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하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소유권이전등기 청구(반소청구)

가. 피고의 주장

피고는, 소외 D가 1975. 4. 23.경 원고를 비롯한 당시 공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토지를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전체를 모두 매수하였고, 이후 E가 1988. 10.경 이를 다시 매수한 이래 E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피고의 점유에 이르기까지 20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·공연하게 점유하였음을 이유로, 원고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

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한다.

나. 판 단

1)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(대법원 1997. 8. 21.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).

2) 갑 제1 내지 4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, 즉 7 피고는 D가 1975. 4.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추인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, 이 사건 각 토지 등기부 상 소유자는 1971.경부터 현재까지 원고로 등재되어 있는 점, L E와 피고 사이의 1997. 4. 9.자 매매계약서 내용에 의하더라도(을 제1호증), 이 사건 각토지 소유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'매도인 E와 전 등기 명의인 측이 이 사건 각 토지 명의 이전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'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, E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를 개시할 당시 성질상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E의 자주점유추정은 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,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, E의 각증언들은 위와 같은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.

4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심판

목 록

1. 전복 순창군 답 3,025m'
2. 답 2,995m³. 끝.

